#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재정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6063 발의연월일: 2024. 11. 29.

발 의 자:이재정·박홍배·김한규

강선우 · 강유정 · 위성락

장철민 · 강훈식 · 복기왕

조정식 • 백혜련 • 안태준

의원(12인)

### 제안이유

현행법은 소방공무원과 관련된 위험직무순직공무원의 요건에 해당하는 재해를 재난·재해 현장에서의 화재진압, 인명구조·구급작업 또는 이를 위한 지원활동, 위험 제거를 위한 생활안정활동으로 한정하고 있음.

하지만 이는 「소방기본법」 제16조, 제16조의2, 제16조의3, 제17조 등에 규정된 소방공무원의 소방활동을 모두 포함하지 못하고 있음.

이에 「소방기본법」에 따른 소방활동으로 인해 소방공무원이 사망한 경우 이 법에 따른 위험직무순직공무원의 요건에 해당하는 재해로 인정하여 소방공무원 및 그 유족의 복지 향상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소방공무원이 「소방기본법」 제16조, 제16조의2, 제16조의3, 제17조등에 따른 소방활동으로 사망한 경우 위험직무순직공무원의 요건에 해당하는 재해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제2호).

#### 법률 제 호

###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호 각 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 가. 「소방기본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소방활동
- 나. 「소방기본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소방지원활동
- 다. 「소방기본법」 제16조의3제1항에 따른 생활안전활동
- 라. 「소방기본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소방교육・훈련
-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따른 직무수행을 위한 긴급한 출동·복 귀 및 부수활동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험직무순직공무원의 요건에 해당하는 재해에 관한 적용례) 제 5조제2호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이 법 시행 전에 발생한 재해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 신 • 구조문대비표

혅 행 개 정 아 제5조(위험직무순직공무원의 요 제5조(위험직무순직공무원의 요 건에 해당하는 재해) 위험직무 건에 해당하는 재해) -----순직공무원의 요건에 해당하는 재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재해를 말한다. 1. (생략) 1. (현행과 같음) 2. 소방공무원이 다음 각 목의 2. -----직무를 수행하다가 입은 재해 가. 「소방기본법」 제16조제 가. 재난·재해 현장에서의 화재진압, 인명구조 • 구급 1항에 따른 소방활동 나. 「소방기본법」 제16조의 작업 또는 이를 위한 지원 활동(그 업무수행을 위한 2제1항에 따른 소방지원활 긴급한 출동 · 복귀 및 부 동 다. 「소방기본법」 제16조의 수활동을 포함한다) 나. 위험 제거를 위한 생활안 3제1항에 따른 생활안전활 전활동 동 라. 「소방기본법」 제17조제 1항에 따른 소방교육・훈 련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따 른 직무수행을 위한 긴급 한 출동・복귀 및 부수활 동

3. ~ 11. (생 략)

3. ~ 11. (현행과 같음)